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4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7나31417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군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군위군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소 10123 판결
변 론 종 결	2018. 4. 11.
판 결 선 고	2018. 5.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77,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4

이 유

1. 기초사실

가. [redacted]군 B 답 1,15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C 답 78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D 답 906㎡(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아버지인 E의 소유였는데, E은 2007. 3. 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07.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10.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2007. 3. 7.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10.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 사건 제3토지에 관하여 2007. 3.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2010. 10. 6.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의 취득세 신고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취득세의 부과고지를 하였고, 원고는 2012. 3. 23. 이 사건 제3토지에 대한 취득세 241,090원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redacted]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6. 2. 11.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취득세 1,036,41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방세법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에 원고는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이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취득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피고가 원고에게 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4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이다.

2) 뿐만 아니라 원고는 2010. 4. 21. 취득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감면세액 ② 항목의 기재를 누락하고, 비과세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으므로 이러한 면에서도 피고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납부하였거나 피고가 배당받아 간 취득세 합계 1,277,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 취득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61조 제1항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자경농민)가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상속 취득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법 제219조 제1항에는 '법 제2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라 함은 농지 소재지 구·시·군 및 그와 연접한 구·시·군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한한다) 중의 1인 이상이 직접 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4

원고는 위 법에서 정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시가 아니라, 원고가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때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이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어느 시점에서 자경농민이라는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구 지방세법 제29조에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에 관하여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2항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지방세법 제29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 제1호에는 '취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구 지방세법 및 동 시행령은 과세물건 취득시에 취득세가 성립하고, 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4

세의무자는 과세물건 취득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취득세를 산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과세물건 취득시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규정하고 있고, 한편 과세물건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의 문언 및 규정 체계에다가,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것이지,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까지 아울러 고려하면,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제26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 당시, 즉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요건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즉, 원고가 자경농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이 상속등기를 마친 때가 아니라, 상속이 이루어진 시점 즉 원고의 아버지인 E이 사망한 시점인 2007. 3. 7.로 보아야 한다.

다) E 사망 당시 원고가 자경농민이었는지 여부

이와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로는 농지원부(갑 제3, 4호증)와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갑 제9호증), 주민등록표(갑 제15, 18호증), 자경증명서, 농업인확인서(갑 제17, 18호증) 등이 있으나, 위 각 증거를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2007. 3. 7.경 원고가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등 자경농민에 해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다만 원고가 E이 사망한 이후인 2010. 10. 26.경에야 이 사건 각 토지가 있는 곳과 같은 동네로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2009. 8. 14.경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실, 원고는 2011. 8. 5.에야 최초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다는 사실 등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07-24

이 인정될 뿐이다.

라) 앞에서 본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에 관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이 있어 당연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2)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 사유는 원고가 납세의무자로서 과세 관청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기재 사항을 일부 누락하거나 구비 서류를 미비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의 이 사건 지방세 부과처분에 절차상 흠이 있다거나 그 흠이 취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에 이르게 할 정도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철

판사 조희성

판사 이용제